



북·중 접경지역 중국업체의 대북 거래관행 분석

이 중 운 국제개발협력센터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jwlee@kiep.go.kr, Tel: 3460-1097)

1. 서론
2. 접경지역내 중국업체의 대북거래 방식
3. 대북교역 중국업체의 대금결제 관행
4. 시사점

주요내용

- ▶ 중국의 대북한 교역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둥 등 변경도시에 위치한 중국업체들이 거래를 주도하고 있음.
 - 접경지역에서 중국업체들은 △변경무역제도를 활용한 수출입 거래, △북한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반입하는 임가공 제조, △북한과 외국기업들 사이에서 중간거래자 역할, △밀무역 등의 방식으로 북한과 거래하고 있음.
- ▶ 접경지역 거래에는 중국과 북한 파트너 간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하여 현물거래, 현금거래, 임가공을 위한 설비와 원부자재의 무상제공 등과 같은 거래방식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현금과 물자가 거래되는 과정에서 음성적인 관행들이 활용되고 있음.
 -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개입이 없는 현금거래, 현물거래, 봇짐무역 등의 비공식적 거래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북·중 간의 교역과 투자에서 비공식적 관행이 지속되는 것은 해당업체들의 선호도 있지만, 투명하지 못한 중국의 무역 및 금융 관행에도 원인이 있음.
- ▶ 북·중 접경지역에서 관행화되어 있는 다양한 비공식적 거래방식을 고려할 때 북·중 간의 교역규모는 공식적인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됨.
- ▶ 접경지역에 관행화되어 있는 거래방식은 최근까지 북·중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지만, 경제협력 확대를 제약하는 요소와 불법적인 요소들이 병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접경지역 중국업체들은 영세하며 1차산품 위주로 거래하고 있어 북한이 교역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품을 발굴하거나 산업회생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움.
 - 지금까지 허가받지 않은 물품과 외화가 북한으로 반입되고 금융기관이 배제된 거래가 관행화되었는데,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거래관행은 중국과 북한의 금융·무역제도 발전을 위해 규제되어야 할 것임.

1. 서론

-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의 심화는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와 북·중 양자간 관계에서 2000년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주요 특징임.
 - 구소련 붕괴 이후, 북한의 최대 무역국으로 중국이 부상하였지만 1990년대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30% 수준을 유지하였음.
 -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이후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림 1]과 같이 2008년에는 73%를 차지하였음.
- 북·중 교역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단동 등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중국 무역업체와 개인 사업자들이 주도하고 있음.
 - 접경지역 중국업체들은 북한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제도적 특혜를 활용하여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음.
 - 북한의 무역회사와 관련기관들도 중국 접경지역에서 정착되어 있는 거래관행을 활용하고 있음.
- 북·중 교역에서 접경지역 중국업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방식이 다양하고 국제적인 규범에 어긋나는 현금거래와 같은 비공식적인 거래가 관행화되어 있어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업체들의 실태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음.
- 본고에서는 중국 단동지역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접경지역 중국업체들의 현황과 북한과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특이점을 살펴보고자 함.

2. 접경지역 내 중국업체의 대북거래 방식

- 중국의 대북 교역은 주로 국경에 인접한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동 등의 접경도시에서는 변경무역의 형태로 활성화되고 있음.
 -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은 2008년 북한으로 20억 3,000만 달러 규모의 물품을 수출하여 중국의 대북 수출 총액의 77%를 차지하였으며, 요녕성과 길림성의 대북 수입규모는 5억 4,000만 달러로 수입 총액의 72%를 차지하였음.¹⁾
 - 북·중 간의 무역은 △정부간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원성 교역, △민간 무역회사나 기업들이 참여하는 일반무역, △국경지역 기업과 상인들에게 특혜조치를 부여하는 변경무역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중국의 대북 수출 총액에서 약 25%를 차지하는 원유는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수출 수량과 가격이 결정되고 있으며, 국제가격보다 낮은 우호가격이 적용되고 국유기업이 개입하여 원조 형태로 거래되고 있음.
 - 민간 무역회사와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일반무역’ 허가증을 교부받아 외국과의 교역에 참여하고 있음.
 - 변경무역은 중앙정부가 지정한 특정 국경지역에서 ‘변경소액무역권’을 허가받은 기업이나 변경지역에 개설된 시장(邊民互市)에서 거래되는 무역을 의미함.

그림 1. 북한의 대중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KOTRA 통계자료 활용 재구성.

1) KITA 중국세관 통계.

■ 중국정부는 낙후된 변방지역의 경제발전 및 인접국가와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변경무역에 관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며, 단동 등에 위치한 중국업체들은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정부의 우대조치를 활용하여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음.

- 변경무역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공업 제품과 식량의 대부분이 유입될 뿐만 아니라 산업생산을 위한 각종 기계류, 전기설비, 화학제품도 수입되고 있음.
-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동지역에 소재한 무역회사와 기업들이 북한과 거래한 공식적 교역규모가 2008년에 7억 달러를 상회함으로써 접경지역 지방정부와 지역경제인의 입장에서 북한이 주요한 협력 파트너가 되는 양상임.

표 1. 북한·단동 간 무역 현황

(단위: 만 달러)

연도	북한·단동 무역총액	단동의 대북수출	단동의 대북 수입
2000	18,410	15,310	3,100
2001	20,100	17,080	3,020
2002	22,200	18,900	3,300
2003	26,800	20,900	5,900
2004	31,400	23,900	7,500
2005	55,268	43,352	11,916
2006	46,200	29,500	16,700
2007	60,200	35,100	25,100
2008	75,000	43,000	32,000

자료: 단동시 상무국.

- 접경지역에서 중국업체들이 북한과 거래하는 방식은 △변경무역제도 혜택을 활용한 수출입 거래, △북한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반입하는 임가공 제조, △북한과 외국기업들 사이에서 중간거래자 역할, △밀무역 등의 불법적 거래 방식으로 분류하여 살펴 볼 수 있음.

가. 변경무역

■ 변경무역에 대한 우대조치는 「대외무역법」과 국무원이 제정한 「변경소액무역 잠정관리방법」 등의 법률규정에 기초하고 있음.

- 주요 혜택으로는 '변경소액무역권' 을 승인받은 업체에 증치세(부가가치세)와 수입관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음.
- 수출입 쿼터 및 허가증에 의해 관리되는 식량 및 국가관리 대상 상품을 거래할 경우, 변경지역 무역회사와 기업들을 취급 허가과 쿼터 배정에서 우대함.

- 또한 개인이나 기업 관계자가 변경지역에서 소규모로 구입한 1인당 3,000위안 상당의 물품에 대해서는 국경 통과 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 제도적 특혜를 받는 변경무역권한을 한정된 업체에게 부여함으로써 변경소액무역권을 획득하기 위한 중국업체의 경쟁이 치열함.

- 단동지역의 경우, 정부로부터 북한과의 변경무역을 승인받은 중국업체는 130개임.
 - 변경무역권의 신청은 매년 3월 시정부에 하고 성정부의 대외경제무역부에서 퇴출되는 업체를 고려하여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 기존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세금 납부 지체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 변경무역권은 계속해서 유지됨.

- 연간 3개 미만의 업체가 신규로 교체되고 있음.

- '소액무역(少額貿易)' 이란 용어와는 달리 변경무역으로 거래할 수 있는 액수의 제한은 없음.

- 북한과의 변경무역을 승인받은 중국업체는 일반무역권을 함께 보유하면서 북한 외의 다른 국가들과 교역을 하고 있음.

■ 변경무역권을 가진 업체는 지역내 기업과 상인들의 수출입무를 대행할 뿐만 아니라 상해, 청도와 같은 역외지역 업체들의 무역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북한과 상거래를 하는 많은 중국업체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 일반 기업과 상인들은 무역서류 작성과 통관업무 등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받을 목적으로 변경무역권을 가진 업체에 수출입 업무 대행을 의뢰하고 있음.

- 변경지역 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북한으로 수출하거나, 변경무역을 통해 수입된 북한 물품이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판매되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음.

- 자금력이 풍부하지 않은 변경무역 업체들이 석탄, 철광석, 곡물, 자동차와 같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거래를 하는 것처럼 세관통계에 나타나는 것은 생산기업이나 다른 지역에 위치한 업체들의 무역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임.

- 수출을 대행할 경우에는 일정액의 수수료와 함께 환급받는 증치세의 20~30%를 원수출업체와 나누어 수익으로 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음.
- 수출 상품의 증치세 환급세율은 15~17%로 납부한 증치세의 거의 전액을 환급받고 있음.
- 2007년까지 증치세 환급(퇴세)률이 11~13%로 낮아졌으나 지난해 경제위기로 수출이 감소하고 기업들의 자금난이 확대되자 중국정부가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률을 높였음.
- 변경무역제도를 활용할 경우 중국업체는 수입관세의 50%를 절감할 수 있고, 이는 곧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출할 때 일반 무역보다 수출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무역회사와 기업들은 변경무역을 통해 무연탄, 철광석, 어패류 등을 판매하고 있음.
- 중국회사들의 대북 거래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이점은 북한의 무역회사·기업 관계자들이 구매와 판매를 위해 중국업체들에 대부분 먼저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점임.
- 삼천리총회사와 같은 대외무역 허가를 받은 북한의 무역회사들은 인력을 단둥 등의 접경도시에 상주시키고 있으며, 북한기업 관계자들이 중국과의 거래가 필요할 때 변경도시를 방문하고 있음.
- 북한 무역 종사자들은 중국과의 거래 경험이 많아 상품의 가격 동향, 변경무역의 법·관행, 거래처 동향 등 중국 현지 사정에 밝음.²⁾
- 북한과 중국의 교역 당사자들은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사업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음.
- 중국업체 입장에서는 북한시장을 자체적으로 개척하기가 어렵고 중국을 출입하는 북한 무역회사 관계자들이 제한되어 있어 기존의 거래선을 주로 활용하고 있음.
- 북한으로서도 외상거래 및 물물교환, 대금의 상계처리와 같은 편의를 도모할 수 있어 사업관계를 오래 지속한 접경지역 중국업체와의 거래를 선호함.
- 변경무역을 통해 북한과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정부의 허가 및 세관의 감독은 일반무역과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국가와의 교역과도 별 차이가 없음.
- 중국이 국제협약의 일환으로 가입한 핵공급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그룹(MTRC), 호주그룹(AG)에서 규정한 핵·미사일·생화학 무기 관련 전략물자는 해외로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음.
- 수출이 금지된 전략물자는 상무부 수출통제처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음.
- 그러나 수출통제 대상 품목이 가장 많은 국제협약인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에 중국이 가입하지 않고 있어 재래식 무기와 관련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해외 반출이 엄격히 통제되지 않고 있음.
- 북한과 거래를 하는 민간 무역회사와 기업들은 무기류와 화학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북 수출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있음.
- 무기류와 군수물자는 국유기업인 군수품무역공사(軍品貿易公司)에서만 국방부서의 수출승인을 받아 취급되고 있음.
- 화학제품은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전문사업체에서만 수출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북한 측과 거래하는 접경지역 무역업체는 화학제품 전문업체에 대리수출을 위탁하고 있음.
- 무기류와 화학품을 제외하고는 사전수출승인과 같은 수출 통제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업체들은 세관에 수출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일반적인 수출절차를 따르고 있음.
- 북한으로 수출되는 물품은 세관에서 샘플 검사방식으로 통관절차를 거친 후 북한으로 반출되고 있으며, 수입되는 북한산 물품도 세관에서 통관검사와 동식물류에 대한 검역을 하고 있음.
- 북·중 접경지역에는 육상으로 이동이 가능한 13개의 통상구가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세관이 설치되어 있음.
- 1990년대 상반기까지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세관들이 북·중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1990년대 하반기부터 단둥을 경유하는 무역액이 전체 교역 총액의 70%를 넘어섬으로써 단둥세관이 북·중 교역의 주요 창구가 되고 있음.

2)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중국 기업인들에 따르면 북한 무역회사 관계자들은 중국업체가 수출 확인 후에 돌려받는 증치세 환급액까지 고려하여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협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함.

-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세관 인원의 제한으로 북한으로 반입되는 차량 10여 대에 1대 정도 한정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통관심사과정에서 수출업체에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최종용도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호가 채택된 6월 12일 이후에도 중국정부는 대북 수출 물품에 대한 통제 리스트를 확대하는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있음.

나. 임가공 제조업

■ 북·중 접경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일부 중국기업은 북한에 원부자재나 관련 설비를 제공하는 방식의 위탁가공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 품목은 의류·봉제 부문이 주를 이루고 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산 합섬직물 및 의류 원부자재의 대북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품으로 의류·봉제 제품이 부상한 것에는 임가공사업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은 2008년 북한으로부터 5,900만 달러 상당의 의류관련 제품(HS 6202, 6203, 6204)을 수입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대북한 수입품목 가운데 석탄, 철광석 다음으로 비중이 큰 품목임.³⁾

○ 임가공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의류봉제 관련 수출입 추이를 볼 때 임가공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임가공사업에 참여하는 중국기업은 중국에서 자체 공장을 운영하면서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주문을 북한에 발주하는 경우와 개인 소규모 중간거래자의 형태로 중국 또는 해외 의류 기업의 위탁을 받아 북한에 임가공하는 경우가 있음.

- 북한으로서는 자본투자가 적고 해외 판매를 위한 유통경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들의 노동력과 기존 설비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가공 사업 확대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북한의 의류봉제 공장들은 과거 1980년대 재일 조총련기업과의 위탁가공사업 경험이 많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자

체 설비 갱신과 현대화를 통해 외국과의 임가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였음.

-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은하무역, 봉화무역과 같은 북한의 무역회사와 생산공장은 기업 자체의 수익 구조(일정 부문의 수익을 내부의 운영자금이나 급여 등의 인센티브로 사용)를 만들기 위해 중국 및 외국기업과의 임가공 사업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음.

- 경제성장에 따른 인건비와 부대비용이 상승함으로써 중국기업 또한 북한에서의 위탁 제조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손재주를 활용하는 과정이 많아 북한산 임가공 제품은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⁴⁾

■ 중국업체들은 발주한 제품의 원단과 각종 부자재를 중국에서 구입하여 북한의 생산공장에 직접 제공하고 노임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무역회사나 정부기관에 지급하고 있음.

- 임가공비로 1장(상의, 하의, 자켓 등)에 평균 1.5달러를 지불하고 있으며,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고급제품의 경우는 임가공 단가가 보다 높음.⁵⁾

- 연간 50만 장의 의류 생산을 위탁하는 중국업체의 경우, 북한에 80~90만 달러를 임가공비로 지불함.

- 북한 무역회사와 기업소는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고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중국 측 파트너에게 기계설비와 장비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지원한 설비 가격을 추후 임가공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임가공사업은 중국과 북한 파트너 간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거래되는 자금과 물품의 이동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음.

- 북한 측은 임가공비를 외화 현금으로 지불하기를 요구하고 있음.

- 임가공비의 현금 지급은 북한으로 반입되는 자금에 대한 중국 정부당국과 금융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도 생산 단위와 관련 기관들이 자체 운영자금과 비자금으로 전용하기가 용이함.

3) KITA 중국세관 통계.

4) 단동 거주 대북 의류 임가공 사업자 면담(2009년 6월).

5) 의류봉제 임가공 사업자 면담.

다. 중국을 경유하는 제3국 교역

- 중국업체들의 대북 거래에는 외형적으로는 북·중 간의 교역으로 보이지만 한국, 일본, 유럽 등의 제3국과의 거래를 위해 북한과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음.
- 사업형태에 따라 △남한기업이 중국에 현지 법인을 운영하면서 북한과 임가공 사업을 하는 경우, △중국기업이 남한이나 제3국의 수입업체 사이에서 중간 거래자 역할을 하는 경우, △석탄 등의 광산물과 농산물 등을 중국으로 반입하여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가 있음.
- 남한기업의 중국 현지 법인은 중국에서 대부분의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북한에 제공하고 있으며 특정 재료는 남한에서 구입하여 보내는 경우도 있음.
- 사례수와 거래 금액은 적지만 접경지역 중국업체가 유럽이나 중동지역에서 주문을 받아 북한산 제품을 거래하는 경우도 있음.
- 중국인 중개인의 경우에는 북한의 생산공장을 방문하거나 현지에 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어 제품의 품질 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음.
- 중국업체가 남한으로 재수출하는 철광석, 아연정관 등의 광산물은 중국항구를 경유하여 남한으로 보내지고 있으며, 농수산물은 남포 등에서 바로 남한으로 반출되는 경우도 있음.

라. 밀무역

- 과거 밀무역으로 중국 상인이나 민간인들이 공해상이나 변경 지역에서 어패류와 식량을 교환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지만, 북·중 국경지역의 중국 측 감독이 강화(철조망 설치, 초병 감시 등)되고 밀무역에 대한 중국정부의 처벌이 강화되면서 규모나 사례가 크게 줄어들었음.
- 정부의 허가를 받는 대부분의 무역업체들은 처벌의 위험이 있는 밀무역을 꺼려하고 있음.
- 대북 교역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 무역업자에 따르면 경제난과 식량난이 다소 완화됨으로써 최근 북한 측 무역회사나 기업들이 대규모 밀수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그러나 북한으로 수출되는 물품은 일부 차량에 대한 샘플 검사 방식을 취하고 있어 중국업체들이 서류와 다른 물품을 적재하거나, 일부 품목의 경우는 세관에 신고 없이 차량이나 열차화물에 섞어서 북한으로 반입되는 사례가 있음.

- 검색절차가 느슨한 점을 이용하여 이중용도 물품이나 사치품이 밀반입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음.

- 또한 중국상인이나 북한거주 화교, 북한 무역회사 관계자는 '붓짐무역' 형태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상당한 양의 물품을 반입하고 있음.

- 국경출입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3,000위안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한도를 초과하고 있음.

- 붓짐 무역의 형태로 북한으로 반입되는 중국산 제품은 식품에서부터 카메라, TV,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들 물품의 대부분은 북한 내 종합시장으로 유입되어 거래되고 있음.

표 2. 중국업체 거래 방식의 주요 특징

변경 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무역권을 승인받은 업체에 증치세와 수입관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정부의 우대조치 - 단동지역의 경우, 130개의 업체가 변경무역권을 가짐. - 변경지역과 이외 지역에 위치한 무역회사와 기업들의 수출입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많은 중국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변경무역의 세계혜택을 받고 있음. - 삼천리 총회사를 비롯한 단동에 상주하는 무역회사와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 기업관계자 및 화교들과 거래선을 형성하고 있음. - 무기류와 화학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북 수출과 관련하여 거래 물품의 종류와 거래액수의 제한은 없음.
임가공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생산공장에 원부자재와 설비를 제공하고 노임에 해당하는 임가공비를 해당 기관에 지급함. - 최근 빠른 성장을 보이는 의류봉제 부문의 대중 수출은 중국업체의 대북 임가공 확대에 기인함. - 기계설비와 장비를 북한에 무상제공하고 추후 지원한 설비 가격을 임가공비에서 차감함. - 외화 현금으로 임가공비를 북한에 지급하고 있음.
제3국 교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기업이 단동 등의 접경도시에서 현지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거나 중국인 대리인이 남한이나 유럽 등에서 주문을 받아 북한과 거래함. - 의류봉제 임가공 사업과 광산물과 농수산물 교역을 위주로 하고 있음. - 변경무역권을 가진 중국업체에 수출입 대행을 의뢰하거나 북한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위에서 살펴본 중국업체들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밀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대에 만연하였던 대규모 밀수는 줄어들었음. - 북한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검역 절차가 체계적이지 못해 이중용도 물품이나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물품들이 차량에 섞여서 반입되고 있음. - 붓짐무역의 형태로 종합시장과 소매상점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물품의 상당량이 반입되고 있으며,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사치품과 기계·전자기기의 부품이 반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3. 대북교역 중국업체의 대금결제 관행

■ 접경지역의 북·중 간 교역에는 국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신용장거래와 은행을 통한 외환결제보다는 거래당사자간의 현금 거래와 물물교환과 같은 대금결제 방식이 관행화되어 있음.

- 현금구매와 현물거래는 북한의 경제난이 극심한 1990년대에 대외지급 신용도가 매우 낮고 경화(hard currency)가 부족한 북한과의 거래 과정에서 일상화되었음.
- 최근 대중 교역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북한당국은 금융기관의 개입이 없는 비공식적 방식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음.

가. 현금결제

■ 북·중 양자간에는 은행을 통한 공식적인 대금결제 방식이 존재함.

- 중앙은행간 합의에 의해 2005년 4월 북한 광선은행 단동지점에 중국위안화, 미달러, 유로화, 일본엔화, 홍콩달러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과 상인들이 대금결제를 할 수 있는 전용계좌가 개설되었음.
- 또한 2006년에는 중국 4대 국유상업은행의 하나인 중국건설은행 단동지점에 동일한 형태의 계좌가 개설되었음.⁶⁾
- 중국업체들이 수입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위해 북한으로 송금을 할 경우, 북한의 고려은행, 화려은행, 광선은행, 통일발전은행 중 한곳에 기업 계좌를 열고 외환송금을 할 수 있음.
- 중국 외국환 관리규정에 따르면 북한으로 6,000달러 이상을 개인이 현금으로 반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은행간 대금결제방식과 외화 반출에 대한 중국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상당수의 중국업체들은 현금 거래를 하고 있음.

- 중국인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단동지역에서 수출된 물품의 21%만 북한광선은행 단동지점에 개설된 북·중 대금결제를 위한 전용계좌를 이용하였음.

- 소규모 물품의 교역은 1990년대부터 북한과 중국 상인들 간에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최근에도 단동이나 연변 등의 중국 접경지역에서 금액이 크지 않은 설비나 원자재를 구입하는 북한 기업소·무역회사 직원들은 현금으로 구매하고 있음.

- 거래금액이 클 경우에는 북한이 지불해야 하는 수입대금에 대해 유로화로 중국업체에 송금하고 있으며, 중국의 수입업체가 북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북한기업 관계자나 현지 중국인 대리인을 통해 외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 수출대금 미회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국업체들은 수출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화물을 출하하는 경우가 많음.

- 앞에서 살펴본 임가공비의 현금지급 요청과 같이 북한 측은 중국에 판매한 물품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를 요청하고 있음.

- 일부 중국 무역회사들은 달러나 유로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수십만 달러 규모의 경우에도 북한 기업 관계자나 중국인 현지 대리인을 통해 북한에 전달할 수 있다고 함.⁷⁾

- 거래 금액이 큰 석탄 등의 철광석과 어패류의 수입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북한 측에 지급하고 있음.

- 북한 종합시장과 수매상점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제품의 상당부분을 반입하는 역할을 하는 북한 거주 화교의 경우, 중국의 친척이나 친구를 통해 거래를 함으로써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교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화교들은 중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친척이나 친구들을 통해 물품을 대리 구매하고 있음.

-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수출입 대금을 상계처리하고 잔액만 현금으로 지불함.

■ 북한 관계자나 중국인 대리인에게 전달된 현금의 일부는 중국 내에서 북한 당국과 기업에 의해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6) 중국인민은행 내부자료.

7) 대북 무역 대행업체 관계자 면담.

- 중국업체가 지급한 외화 현금의 대부분은 중국을 출입하는 북한 기업·무역회사 관계자들을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고 있음.
- 대금의 일부는 중국에서 북한 현지기관 및 관계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거나 추가적인 물품 구입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
- 또한 자금의 일부는 중국은행의 북한 민간기업 계좌나 중국인 대리인의 계좌에 예치되어 북한당국이 필요할 때 현금화되어 북한측에 전달될 가능성도 있음.

나. 현물 거래

- 북·중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 현격히 줄었지만, 수출입 당사자 간에 합의한 현물을 교환하는 구상무역도 북한과 중국업체들이 활용하는 주요 거래방식임.
- 1990년대 구상무역의 비중은 변경무역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지만, 양국간 교역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거래품목이 다양화됨으로써 최근 구상무역의 비중은 약 5~10% 수준으로 낮아졌음.⁸⁾
- 그러나 단동 등의 접경도시에 위치한 중국업체들은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할 수출 대금을 현물로 지급받는 경우가 빈번함.
- 중국업체마다 현물거래의 비중과 거래 품목이 다르나, 면담한 업체의 경우는 수출한 물품대금의 80% 정도를 북한으로부터 송금받고 20% 정도는 현물로 지급받고 있음.
- 구상무역을 통해 북한에서 반입되는 현물은 어패류, 농산물, 석탄, 철광석 등임.
- 한편 소액 거래뿐만 아니라 대규모 거래에서 물물교환 방식이 북·중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 실례로 지난 5월 중국 무역회사가 북한에 옥수수를 제공하고 북한으로부터 석탄 10만 톤을 산동성 룡구항으로 반입하였음.⁹⁾
- 북경의 북한대사관 관계자가 중국업체들을 직접 접촉하여 거래들 성사시켰음.

8) 중국인민은행 내부자료.

9) 중국 무역업체 관계자 면담.

다. 비공식 대금결제 관행화의 원인

- 현금결제와 현물거래의 관행화는 북한 측의 요구가 주된 이유이지만 일부 중국업체 또한 비공식적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임.
- 2005년 9월 미 재무부의 마카오 BDA 금융제재조치를 경험한 북한으로서는 중국은행의 북한 관련 계좌 동결 및 송금제한 조치와 같은 향후 예상되는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를 회피하는 방안으로 비공식 거래방식을 확대한 것으로 보임.
-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의 52개 계좌에 예치된 북한자금 2,500만 달러는 2005년 9월부터 1년 9개월 동안 동결되었으며, 미국은 아시아 및 유럽에 걸쳐 북한의 해외금융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음.
- 북한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낮은 신인도 문제로 중국업체들과 은행을 통한 대금 송금방식을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중국기업에게 받는 수출대금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받음으로써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접경지역 중국업체들이 무역과정에서 은행거래를 회피하는 것은 송금 수수료(결제 총액의 0.7%)의 절감과 함께 신용장 개설의 문제, 기업 세금 회피 등이 주요 원인임.
- 중국 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일정금액을 은행에 예치하여야 되는데 변경지역 업체들은 자금을 은행에 두기를 꺼려하고 있음.
- 또한 은행 거래를 주로 활용할 경우, 자금 이동이 세무당국에 쉽게 포착될 수 있어 현금거래를 선호함.
- 접경지역 중국업체와 상인들은 북한과의 거래에서 현금결제와 현물거래에 익숙하여 북한 측 파트너가 비공식적 대금결제 방식을 요청하더라도 거래에 대한 거부감이 적음.

4. 시사점

- 북·중 접경지역에서 관행화되어 있는 변경무역을 통한 물자 교류, 현금구매, 현물거래, 봇짐무역 등을 고려할 때 북·중간의 교역규모는 중국세관 자료를 활용한 공식적인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됨.

- 중국과 북한의 업체들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세제혜택 및 통관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거래되는 물품과는 다른 품목과 가격을 서류상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음.
- 반출입되는 물품의 대금이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현물로 교환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거래되는 품목, 수량, 가격조건을 세관이나 금융기관이 확인하기가 어려움,
- 또한 붓짐무역과 밀수 형태로 상당한 규모의 중국산 물품이 북한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접경지역에 관행화되어 있는 거래방식은 최근까지 북·중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지만, 거래 규모와 거래 당사자가 제한되고 불법적인 요소들이 병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낮은 국제신인도와 북한이 판매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접경지역 중국업체들은 북한이 현금거래, 물물교환, 외상거래 등의 비공식적 거래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유일한 교역 파트너일 것임.
- 그러나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접경지역 중국업체들은 자금과 규모면에서 영세함.
- 또한 변경무역제도를 활용한 세제상 혜택과 중국에서조차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저가의 노동집약적 제품 및 광산물, 농수산물 등 1차산품의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남기는 구조이므로 북한이 교역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산업회생을 위한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움.
-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배제된 북·중 간의 교역방식은 수출대금 미회수와 거래당사자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여 향후 거래량과 거래품목의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임.
- 특히 금융기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다량의 외화 현금이 지급되고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물자와 현금이 반출입되는 것은 중국 국내법에 저촉되는 불법적인 거래임.
- 중국정부가 향후 금융제도와 교역관행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현재 접경지역에서 만연하고 있는 비공식적·불법적 대금결제 관행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경우 접경지역에서의 중국과 북한 업체들의 거래는 크게 위축될 수 있음.
- 중국의 교역체계가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발전되고 변경지역에서의 밀무역과 같은 불법적 무역활동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묵인 내지 방조하던 금융기관이 배제된 현금거래와 한도 이상의 외화 반출입을 규제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북한은 중국업체와의 거래에서 활용하는 비공식적인 거래방식을 개선하고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 무역의 다각화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 **KIEP**